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도 및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상품 안내



Contents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03

02 상품 안내 07

03 FAQ 15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2021.1.26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

※ 공포 1년 후 2022.1.27 시행(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24.1.27 **확대시행**)

• 법률 목적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동시에 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자** 등을 처벌

• 처벌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근로자 피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상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중

- ①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18년)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20년)

중대시민재해(일반시민 등 제3자 피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고 ('11년)
세월호 사고 ('14년)

※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주요 처벌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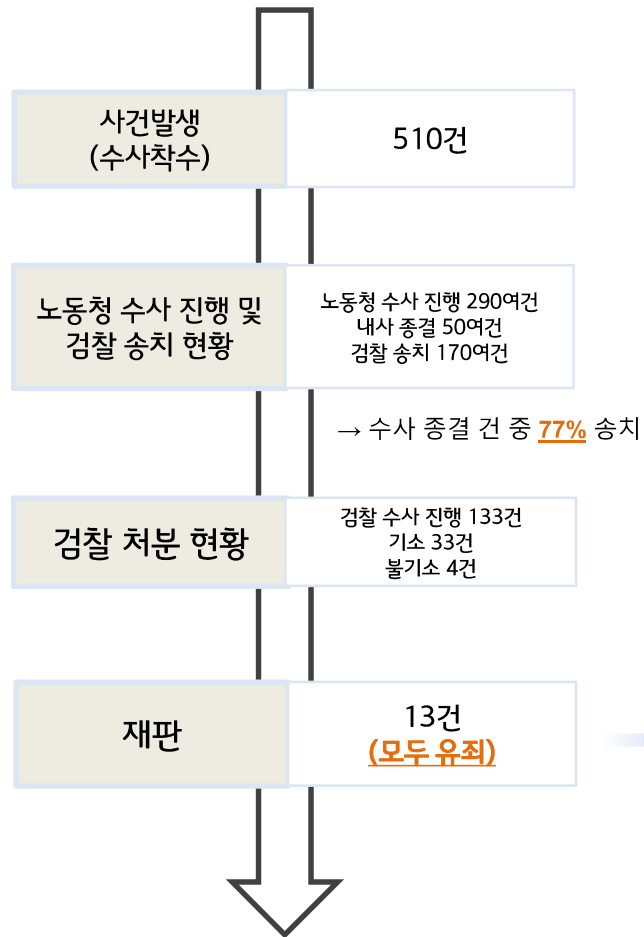
처벌대상	처벌수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사망)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 병행 부과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발시, 이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 **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인 또는 기관	*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항목	처벌수준
징벌적 배상책임	손해액의 5배 이내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 그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 공표 가능

※ 본 자료는 법률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현황(~'23.12.31 기준)



* 유죄 판결 사례

업종	사고내용	처벌	
		대표이사	법인
건설업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
철강제조업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실행)	벌금 1억원
건설업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
주택관리업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약 1.1미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골판지제조업	골판지 공장 골판지 가공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 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 몸이 끼여 사망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원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요약)

처별내용	보장필요항목	보장가능여부	보험상품 내용
법률상 배상책임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O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형사책임	형사방어비용 보장	O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단, 무죄시에 한함)
	벌금 보장	X	
징벌적 배상책임	징벌적 배상책임 보장	O	징벌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법률 제 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
중대산업재해 사실공표	대응 비용	O	위기관리 실행비용 I 특별약관 (법률 제 13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공표시 보상)
			위기관리 실행비용 II 특별약관 (형사절차 개시시 보상)
과태료	과태료 보장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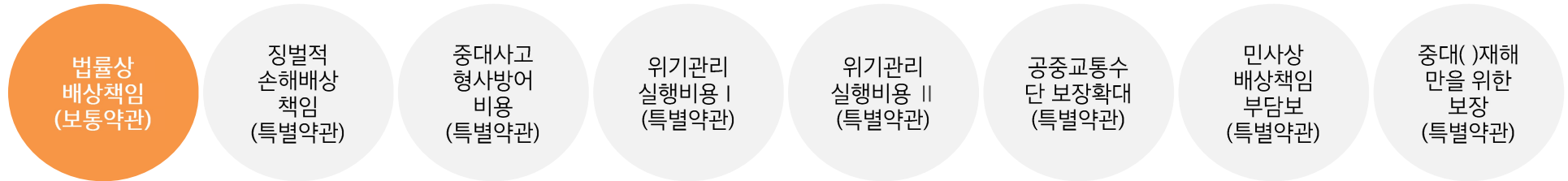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상세)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u>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u>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u>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u>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u>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u>을 담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 단, 형사사건 방어비용은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여부 불문, 의부보험 보상금(산재보험, 공제 등) · 공중교통수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약으로 담보 · 공해물질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 오염손해 보장확대 특약으로 담보 · 징벌적 손해 배상금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으로 담보 · 벌금, 과태료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상세)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I
(특별약관)

공중교통수
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중대()재해
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중대재해 처벌법 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손해액 구성요소	-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 등) -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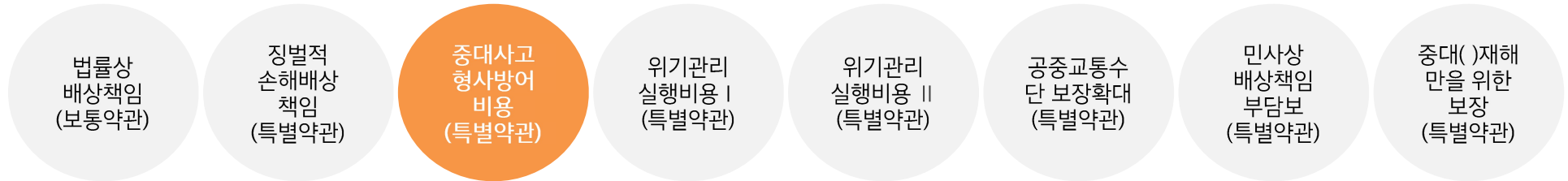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상세)



구분	내용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변호사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단, 소급보상일자 이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이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인 경우에 한정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란?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접수, 입건, 출석요구 등 통지를 최초로 받은 일자 단,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함
보상 조건	1)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2) 법원에 소송 제기 시 ‘무죄’ 선고된 경우 -> 심급별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라도 상급심의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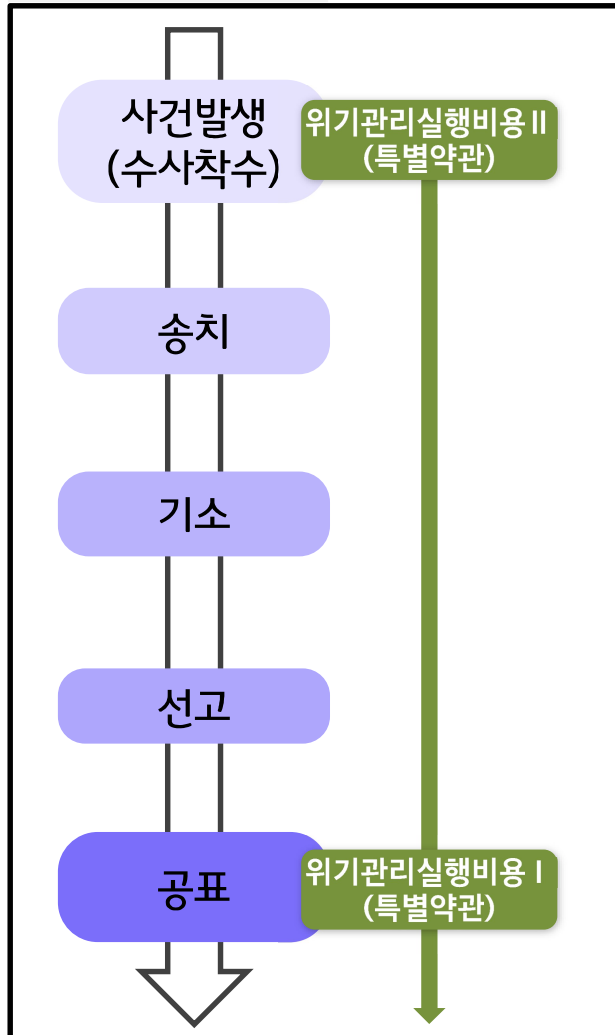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위기관리실행비용 비교

중대재해 발생 시나리오



	위기관리 실행비용 I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I (특별약관)
보상하는 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시민재해 포함)
보상 조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경우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의 발생
담보 항목	- 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 - 사과문의 작성비용 및 송부비용 - 사죄광고 게재비용 - 기자회견 개최비용 - 위로금, 위문품 비용	- 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 위기관리실행비용 I, II 중복가입 불가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상세)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I
(특별약관)

공중교통수
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중대()재해
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구분	내용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정의된 공중교통수단 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 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상품내용 (상세)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

중대사고
형사방어
비용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
(특별약관)

위기관리
실행비용 II
(특별약관)

공중교통수
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중대()재해
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구분	내용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음 -> 근재보험 등 타 보험과 중복 방지 목적 단, 하청업체에서 근재보험 미가입 시 원청업체인 피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담보 공백 발생 가능
중대()재해 만을 위한 보장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 제1호의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로 한정. 특별약관이 부과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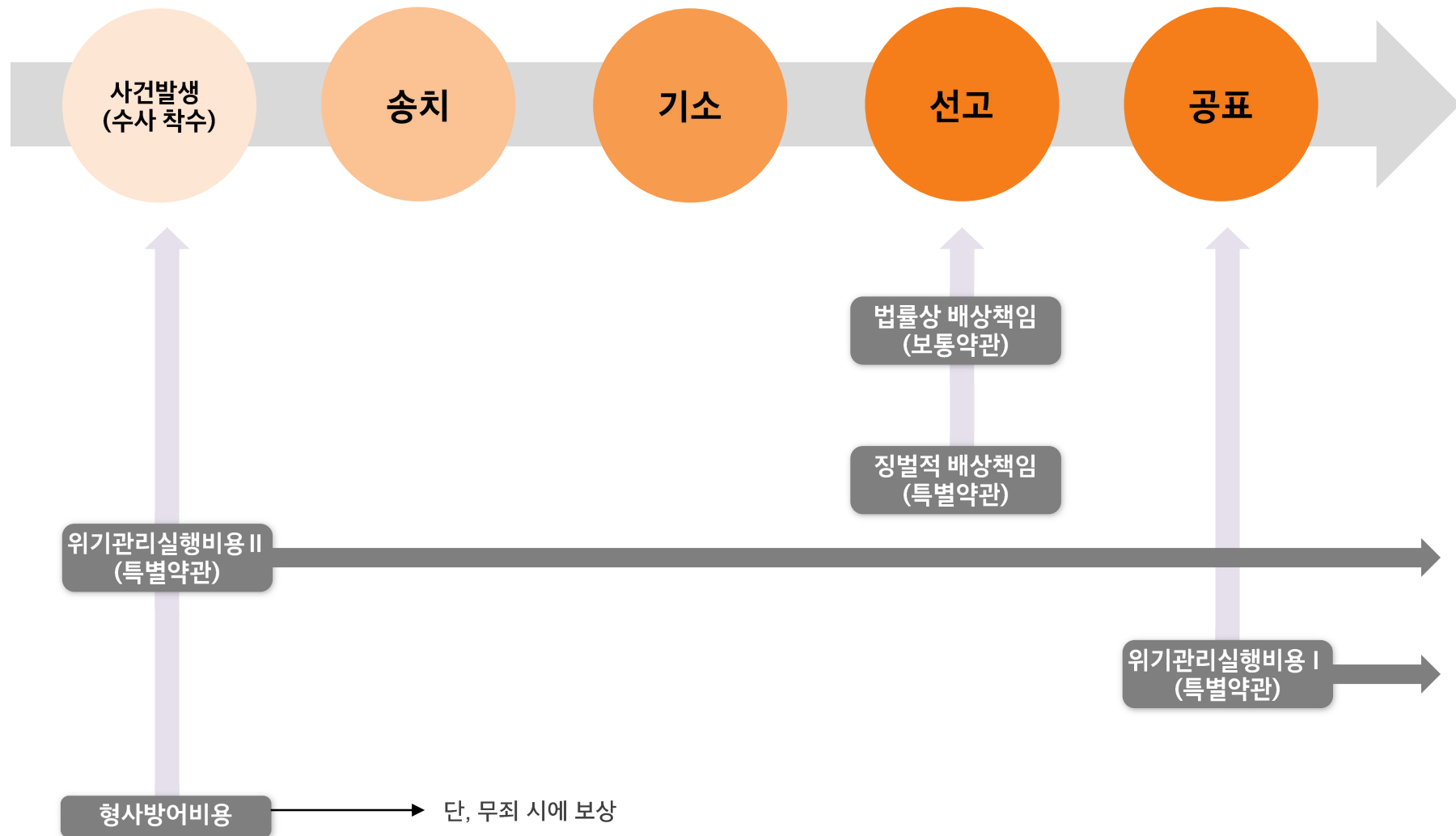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상품 안내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 중대재해 발생 시나리오





03. FAQ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Q1.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에서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 소속의 파견, 하도급, 용역 등의 근로자 모두 포함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 : 수급인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도급인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

Q3.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4.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2024년 1월 27일에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03. FAQ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Q5.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6.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타 업종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7. 보험 가입 시 업종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가입 시의 업종 기준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Q8. 형사 방어비용(특약)의 상세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로서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를 받게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권 없음과 같이 기소가 되지 않거나 형사소송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전제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의 형사 방어비용을 담보합니다.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한정)

Q9.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 I, II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당 특약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재해, 시점 및 보상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기관리실행비용 I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형 확정시)시

→ 위기관리실행비용 II : 중대재해(시민재해 포함) 위반으로 인해 수사개시 시

※ 보상하는 비용 약관 참조



04. FAQ

Q10. 다른 상품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타 상품에서 보장하는 부분과 중복될 경우, 특정 담보 제외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국내근재	영업배상	생산물배상	임원배상
관련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가입 전제	시설 소유, 관리상의 책임	제조물책임법 제조, 설계, 관리상 책임	업무상 과실 경영배상책임
피보험자	법인, 기관,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사업주	법인, 임원
사용자배상 (중대산업재해)	○ (보통약관 담보)	○	X	X	X
제3자손해배상 (중대시민재해)	○ (보통약관 담보)	X	○	○	X
징벌적 배상책임	○ (특약담보)	X	X	X	X
형사 방어비용	○ (특약담보, 단 무죄 한정)	X	X	X	○ (보통약관 담보, 단 무죄 한정)
민사 방어비용	○ (보통약관 담보)	○ (보통약관 담보)	○ (보통약관 담보)	○ (보통약관 담보)	○ (보통약관 담보)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